

##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제5조, 제19조 및 제111조 관련)

일반직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경 찰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	상사·중사	하 사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군무원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서 “마급” 연 봉 상 한 액의 6할을 초과한 기본 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서 “마급” 연 봉 상 한 액의 6할 이상의 기본 연봉을 받고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